

의안번호	2206771
의 퇴 인	강경숙 의원
회 답 일	2025.01.08.
추계번호	24C6120
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 (학습지원 전담교원)	(제1항)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(이하 “학습지원 전담교원”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전담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		(제3항) 그 밖에 학습지원 전담교원의 지정,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 (학습지원 전담교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지정할 수 있던 기존 학습지원 ‘담당’교원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배치할 수 있는 학습지원 ‘전담’교원으로 하는 내용임
 - 현행법 제9조¹⁾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
 - － 시·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초등 6,724명, 중등 3,854명, 고등 2,971명의 학습지원담당교원이 지정되어 있음²⁾

1) 제9조(학습지원 담당교원)

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9이하 “학습지원 담당교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습지원전담교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전담교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구체적 비용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³⁾
 - 시·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일부 시·도교육청에서는 현행 ‘학습지원 담당교원’ 중 일부 또는 전부를 ‘전담’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
 - － 시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모두 전담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, 인천·광주·대전·울산·강원·충북 등의 교육청에서는 일부 인력을 전담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
 - － 또한, 일부 교육청은 해당 전담인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‘강사’ 또는 ‘시간제·기간제’형태로 운영하고 있음⁴⁾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나, 시·도교육청별·지역별로 교육 여건 및 필요성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기배치·운영되고 있는 인력 이외에 신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채용·배치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함
- 이에 개정안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2) 시·도교육청 제출자료 취합 인원

3) 안 제9조제2항에 따른 연수는 기존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연수를 전담교원에게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

4) 충남교육청의 경우 학습지원 담당교원 중 초등 34명과 중·고등 1명을 ‘전담’업무로 운영하되, 기간제·시간제(6시간)로 운영하고 있으며,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초등 82명을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강사가 44명임(자료: 각 시·도교육청)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